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안 번호	53
----------	----

제안년월일 : 2003. 5. 22
제안자 : 최광렬 의원외 6인

1. 주 문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사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과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비 승인안을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 7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하고자 함.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하구청장이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심사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예산 운용을 유도하고 정확한 재정수요 및 수입예측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도모코자 함.

3. 주요내용

- 가. 구성위원정수 : 7명
- 나. 위원선임 : 각 상임위원회별 배정위원을 추천 받아 본회의 의결로 선임
- 다. 상임위원회별 위원배정 : 총무위원회 3명, 사회도시위원회 4명
- 라. 활동기간 :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112회 임시회 및 제113회 제1차 정례회)

4. 관계법령

- 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 나.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